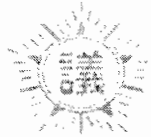


- 201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5. 5.**

**행정건설위원회**

# 201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안	
번호	

제안일자 : 2015. 5.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2016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한다. (2015. 6. 11 ~ 2015. 6. 19)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및 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으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8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실, 동 주민센터로 한다

##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 11. 29)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 12. 23) 제39조~제50조, 제52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

# 201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2015. 6. 11(목) ~ 2015. 6. 19(금) [9일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 동 주민센터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행정건설 위원회	행정건설 위원회 위원 전원 (8명)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행정건설 위원회실	김은모	양성우
		교통건설국		박상수	이기연
		동주민센터	해당 동주민센터	김은모	양성우
		마포문화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건설 위원회실		

## 5. 감사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15. 6. 11(목)	○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2개소
2015. 6. 12(금)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2015. 6. 15(월)	○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문화관광과	
2015. 6. 16(화)	○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 - 민원여권과 - 전산정보과 - 생활체육과	
2015. 6. 17(수)	○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과 - 지역경제과 - 일자리진흥과	
2015. 6. 18(목)	○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 - 재 무 과 - 세 무 1과 - 세 무 2과 ○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2015. 6. 19(금)	○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건설관리과 - 토 목 과 - 치 수 과 - 부동산정보과 ○ 감사종료 선언	

## 6. 감사요령

감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의 각과 및 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 7. 감사 진행순서

- 가. 감사실시 선언
- 나. 위원장 인사
- 다. 증인선서
- 라. 피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마. 업무보고 청취
- 바. 질의·답변
- 사. 감사종료 선언

## 8. 행정사항

- 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